

보직 변경 후 거래처와의 잊은 마찰 등 직장질서를 어지럽히다 다시 복귀한 이후에도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정직은 정당하다

2006구합28673

재/판/요/지

영업부서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 거래처와 잊은 마찰을 빚어 급기야 일부 주요거래처로부터 출입을 정지당 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참가인의 요구를 묵살했고, 그 후에도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회사 동료와 융화하지 못하는 등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C산업사'라는 상호로 유압실린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03. 10. 6 C산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대표자의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12. 26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

-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은 이미 징계기간이 종료하여 원고는 더 이상 그 징계사유의 존부와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 대표자의 지시불이행 등이고, C산업사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에는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소정의 '출근 성적이 불량' 하다는 것은 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범주에는 정상적인 출·퇴근 이외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작업을 종료한 경우도 포함될 여지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면 이 사건 정직은 위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소정의 징계처분으로서 향후 해고사유의 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산업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4명이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대표가 1인 밖에 참석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징계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는 C산업사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경비근무를 위해 참가인에게 복장과 장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근무하라고 하여 근무복 위에 사복을 입고 근무했던 것이며, C산업사 경비실 주변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므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청소를 하는 동안 차량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경비실 주변도로를 청소하라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0. 6 C산업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도금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 24경부터 영업 및 납품 담당 주임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보직변경 이후 C산업사의 거래처 담당자들과 잣은 마찰을 빚었고, 별도의 수당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머리염색, 부적절한 언행, 난폭한 운전습관 등을 이유로 C산업사의 주요 거래처인 H중공업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두발, 복장 및 언행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사생활 간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참가인은 2004. 6. 20 원고를 영업부서에서 생산직부서로 전보시켰다.

(3) 그 후 참가인은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장들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작업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부서원들과 잣은 다툼을 벌이는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함께 근무하기 어려운 직원으로 인식되어 배척당하게 되자 원고를 방진실, 가공부 조립실, 검사실 등으로 약 2개월 단위로 근무부서를 변경하게 했다.

(4) C산업사는 2004. 9월경 노사협의회를 거쳐 직원 통근버스의 운행시간을 변경했는데, 원고는 그 변경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지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원고는 C산업사 임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항의했다.

(5) 해고 및 복직 경위

①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8. 25 원고를 징계해고했다.

② 원고는 위 해고에 불복하여 2005. 8.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78호로 구

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5 위 해고를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5. 11. 30 원고를 C산업사 경비실로 복직시켰다.

(6) 원고는 C산업사로 복직된 이후 종종 참가인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경비실 근무를 하였고, 2005. 12. 22 참가인으로부터 경비실 주변 및 출입도로의 청소를 지시받았으나 청소하는 동안 차량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다른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참가인의 지시를 거부했다.

한편, C산업사가 위치한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공장을 입·출입하는 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의 통행은 찾지 않다.

(7)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징계기간이 종료된 2006. 3. 27 원고를 C산업사 경비실로 복귀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경비실 근무를 하고, 참가인의 경비실 및 주변도로 청소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C산업사 취업규칙 제81조 제7호, 제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경비실 근무를 위한 경비복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근무하라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경비실 주변도로의 청소지시를 거부한 것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C산업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청소작업이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큰 지장을 받을 만큼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작업환경이 광범위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차량통행을 감시할 인원의 배치를 요구하면서 참가인의 청소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항변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